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3. 12.



여 성 가 족 부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19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동 시설의 구조, 설비기준 등의 명확성 및 구체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공동육아나눔터 시설기준에 관한 제13조의3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삭제(안 제13조의3)하고, 별표4의2를 신설하여 공동육아나눔터의 입지조건, 규모, 구조 및 설비기준과 공간별 설비기준을 명시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”를 “별표 4의2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정하여 고시한다”를 “정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의4제3항 중 “별표 4의2”를 “별표 4의3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[별표 4의2]

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

1. 입지조건

공동육아나눔터는 보건·위생·급수·안전·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하여야 한다.

2. 규모

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3. 구조 및 설비기준

가. 일반기준

1) 공동육아나눔터의 구조와 설비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
2) 활동공간, 사무공간, 화장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나. 설비기준

1) 활동 공간

① 난방 및 통풍시설을 갖추고,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게 하여야 한다.

2) 사무공간

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3) 화장실

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4) 비상재해대비시설

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, 비상구를 설치하며,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5)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① 공동육아나눔터 내부의 마감재료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불연재료,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 물품은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별표4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3조의3(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) ①	법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(이하 “공동육아나눔터”라 한다)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3조의3(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) ①	-----	-----
1. 환경·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할 것		-----	-----	-----
2.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일 것		-----	별표 4의2	-----.
3.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것		-----	<삭 제>	
4. 벽 및 천장의 마감재료는 불연·준불연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, 커튼류 및 카펫류 등은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		-----	<삭 제>	
5. 아이돌봄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·난방 시설, 통풍 시설, 출입시설, 창문시설, 수납시설, 소화시설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		-----	<삭 제>	
② (생 략)		-----	<삭 제>	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		-----	<삭 제>	

사항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및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3조의4(육아도우미 신원확인
증명서 발급 절차 등) ①·②
(생략)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별표 4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의뢰서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· ⑤ (생략)

_____ 정

한다.

제13조의4(육아도우미 신원확인
증명서 발급 절차 등) ①·②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별

표 4의3-----

— — ●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32